EAID-CG

수 신: 하기 배부처 참조

제 목: 지휘 지침서 #2: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예방 (SHARP) 프로그램

1. 참고 자료: 첨부 1 참조.

2. 적용 대상. 본 정책은 2사단/한미연합사단에 (2ID RUCD) 소속된 영내 및 영외 거주자 및 근로시간 내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바임 .

3. 목적. 미2사단/연합사단은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용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음으로서 안전한 지휘 환경 조성에 전념할 것임.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이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보복행위는 미육군 가치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임. 미육군 그리고 미2사단/연합사단은 그 어떤 유형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단 내 SHARP프로그램은 모든 장병, 군무원, 그리고 군인가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뢰의 문화를 함양함으로서 육군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임.

4. 배경.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는 미육군 지역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나아가 각 가정의 소중한 아들 딸들을 미육군 각 계급별 조직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이 믿고 맡기는 신성한 가치와 약속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임. 이는 극히 기능적인 조직의 필수적인 기반을 위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대한민국에서의 ‘파이트 투나잇’ 임무를 위한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 사단 지휘계통에 속한 모든 제대는 이러한 행위를 각 부대의 준비태세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여 각 제대별로 역량껏 이런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5. 논의.

1. 성희롱:
2. 성희롱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 부탁 및 요청, 성적본성이 담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적 언행 혹은 행동을 포함함. 이는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 또한 동일하게 간주함. 성희롱의 가장 위험한 형태는 ‘대가성’임. 이는 당사자가 거부시 본인의 직업, 급여, 직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3. 장병과 군인가족은 협박, 보복, 응징 혹은 추가 희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SHARP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부에 성희롱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모든 지휘계통책임자는 모든 혐의와 신고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할 의무가 있음. 아래와 같이 성희롱 신고 방법에는 세가지 옵션이 있음.
4. 익명 신고. 개인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익명으로 지휘부에 성희롱 혹은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취할 수 있음. 단순히 신고 노트를 작성 후 담당 사무실 문밑으로 밀어 넣어 제출하거나, SHARP핫라인, SAFE헬프라인, 그리고 ICE신고를 활용할 수 있음. 각 여단 지휘관은 여단 SARC와 여단 법부무의 지원아래 모든 접수된 익명 신고 건에 대해 긴밀히 검토할 것임.
5. 비공식적 신고 옵션. 개인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공개를 원할 경우 성희롱 관련 건에 대해 SHARP사무실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피해자 담당변호사(VA)를 통해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세지나 행동 시정조치를 전달할 수 있음.
6. 공식적 민원. 모든 사건은 발생일 기준 60일 이내로 혹은 여단 지휘관 재량권 아래 진행되어야 함. 공식적 민원은 여단 SARC에 의해 처리될 것이며 모든 관련 서류의 대한 정확성은 여단장 책임 아래 진행될 것임. 공식적 성희롱 민원은 철저한 사건조사를 거쳐야할 것이며 조사관의 조사결과 모두 사단 지휘부에 보고될 것임.
7. 미군무원 성희롱 관련 건은 AR-690-600에 의거하여 사건 발생일 45일 이내 EEO사무실을 통해 보고되어야 함. 미군무원은 미8군 EEO사무실 DSN (315)755-0320 또는 0503-355-0320 상용선을 통해 신고 가능함.
8. 군인 신분의 가해자인 경우, 이에 응당하는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질 것임. 육군 명령 2022-13 (미육군 성폭력/성희롱 대응 개혁)에 의거 지휘관은 혐의입증된 공식 성희롱 신고 민원에 관련된 모든 장병에 대해 비자율적 행정 격리 조치를 취할 것임. 당사자의 지휘계통에 속한 대령급 지휘관은 다소 가볍게 입증된 혐의에 관련 당사자에 대한 복귀 혹은 무혐의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복귀 혹은 무혐의 조치에 부당함: 대가성 행동이 연루되었거나 상관이 자기 부하를 성적의도로 접촉했을 경우 혹은 재범인 경우.
9. 성폭력
10. 성폭력은 미연방법과 현지법 및 군사법전(UCMJ)상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범죄임. 성폭력은 무력사용, 무력위협, 권한 남용 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권이 없는 경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의도적인 성적 접촉으로 정의되는 범죄임. 가해자가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거나 강제로 피해자를 범하려하는 상황을 포함해 또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수면 중이거나, 신체적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동의권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간주하는 것임.
11. 모든 성폭력 피해 생존자는 존중과 존엄성에 기반한 처우를 염두하며 대할 것임. 지휘부는 연민의 마음을 갖고 생존자들이 알아야할 권리, 옵션, 그리고 가용 지원 및 자원에 대해 전달할수 있도록 할 것임. 이들은 또한 이차보복 혹은 추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는 첨부2 정책서를 참조하기 바람.
12. 군인신분의 구성원과 성인인 군인가족을 비롯한 민간인직원과 그들의 SOFA신분 성인가족구성원 모두 두가지 신고 옵션이 있음.
13. 제한적 신고. 본 신고옵션은 피해자가 소속 지휘부나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원치않아 앞서 의료, 상담, 특별피해자상담(SVC) 및 법률적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싶은 경우 해당함. SHARP전문담당관은 신원 및 비밀 보장을 명심할 것임. 하지만, 피해자가 제한적 신고 방식에 변심하였을지라도,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사건에 대해 의뢰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적 신고 방식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14. 비제한적 신고. 위와 동일한 의료, 상담, SVC 및 법률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됨. 지휘부에 사건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되 수사가 진행될 것임. 입증된 비제한적 신고 성폭력 조사 결과여부에 따라, 피해자는 다른 기지 혹은 지역으로 조기 전출 신청 권한이 있음.
15. 모든 성폭력 사건은 미2사단/연합사단 사단장에게 전달 및 보고 될 것. 제한적인 신고에 경우, 해당 인원의 개인정보(PII)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유지할 것임. 현행법상, 특별재판위원회(OSTC)가 독립적인 기소 기관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 중임. OSTC에서 위임할 경우, 여단 지휘관에게 권한이 확장됨.

6. 예방. 모든 미육군 커뮤니티에 소속된 구성원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운동에 동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모두가 우리 장병, 민간인직원, 그리고 가족들을 지킬 의무가 있음. 단 한번의 사건도 중대한 사건임을 인지하길 바람. 모두 경각심을 갖고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바람. 모두가 비적절한 성적 대상이 될 수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 기관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함.

7. 다음 24/7 연중무휴 비상연락처를 참조: 미8군 SHARP핫라인 DSN 158, cell 010-8840-0014, 상용선 0503-363-5700. DoD SAFE헬프라인 877-995-5247 또는 https://www.safehelpline.org.

8. 발의. 본 지침서는 AREA I & II 및 미2사단/연합사단 SARC선임담당관에 의해 발의됨. 담당관 연락처는 DSN 315-755-5062 또는 010-2820-7223. 미8군 SHARP행정 메일은: usarmy.humphreys.8-army.mbx.g1-sharp-admin@mail.mil 임.

2 첨부자료 CHARLES T. LOMBARDO

1. 참고자료 Major General, USA

2. 피해자 권리 Commanding